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1. 1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담양군의회 회의록을 기존 종이제작 방식에서 전자회의록을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구 정정 기한 정비(안 제47조제1항)

- (기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 (개정)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

터 5일 이내에”

나.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방식 정비(안 제48조제1항)

- (기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개정)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4. ~ 11. 19.(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담양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협약이 이루어지지”를 “협약이 이루어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 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선거후에”를 “선거 후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를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선거일”을 “의장 선거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군수”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후본회의”를 “후 본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 회”를 “본회”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에대하여”를 “안전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본문 중 “심의중인의안”을 “심의중인 의안”으로, “수있도록”을 “수 있도록”으로, “5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며,소견”을 “한하며, 소견”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물러날때”를 “물러날 때”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의원 은”을 “의원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의제”를 “동일 의제”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일정

제46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할수”를 “변경할 수”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복사등”을 “열람·복사 등”으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록을”을 “회의록에”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8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71조제3항 후단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본 회의”를 각각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u>담양군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83조에 따라 <u>담양군의회</u> ----- ----- ----- ----- -----.
제2조(등록) <u>의회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u>담양군의회 의원</u> ----- ----- ----- -----.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u>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u>	제3조(의석배정) ① ----- ----- ----- ----- ----- ----- -----.
② <u>총선거후</u>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u>사무과장</u> 이 지역선거구 등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u>총선거 후</u> ----- ----- <u>의회사무과장</u> ----- -----.
제4조(개회식) <u>의회</u> 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u>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u>	제4조(개회식) <u>담양군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 ----- ----- <u>총선거</u>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
식을 행하고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
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
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③·④ (생략)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
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
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
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
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후 ----- 선거 후에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
표자----- 최다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다득
표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

---.

② --- 총선거 후 -----

-----.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③ (생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1 이상-----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 1 이상-----

-----.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1 이상-----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 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

----- 후 본회의-----
-----.
----- 본회-----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

----- 안건에 대
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

----- 동의자 외 -----
-----.

제22조(수정동의) ① -----

----- 1 이
상-----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인이내
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
안,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 사항
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
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
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
에서 물러날때에는 부의장이 의
장을 대리한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
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
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
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
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
결에 참가할수 있다.

----- 심의중인 의
안-----

----- 수 있도록

-- “5분 자유발언”-----

-----.

한하며, 소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물러날 때-----

-----.

제39조(표결의 참가) -----

----- 의원

은 -----.

-----.

제41조(표결방법) ① (생 략)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 ④ (생 략)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 2. (생 략)

3. 의사 일정

4. ~ 14. (생 략)

② (생 략)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본회의-----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다음 사항-----
-----.

1. · 2. (현행과 같음)

3. 의사 일정

4.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2인 이상-----
의회사무과장-----.

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
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
를 변경할수는 없다.

②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
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
는 회의록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
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
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 임시회의록이 의
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
-----.
-- 변경할 수----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
자회의록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배
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
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

----- 열람·복사 등-----
----- 없
는 한 -----

아니된다.

③ (생략)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8조(군수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② (생략)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않은 -----
-----.

----- 회의
록에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군수등의 발언) -----
----- 본 회의 -----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본 회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게 이를 보고한다. 이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 본 회의-----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본 회의-----

-----.